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시설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소일로부터의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본인부담금은 계좌이체로 매월 말일 신한은행 최한기 (참사랑 노인 요양원)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하단 별첨 자료 참조 바람

4. 입소 계약 시 준비서류

본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입소 계약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3) 입소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4) 병원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5) 처방전 1부
- 6) 입소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7) 기타 시설이 요청하는 서류

5.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일단 문자로 보고드린다.)
-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및 각종 설비 이용의 권리
- ④ 재활 및 생활서비스 등 계약에 따른 입소자로서의 서비스 향유 권리
- ⑤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 및 피보호 권리
- ⑥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⑦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⑧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 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⑨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⑩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시설에서 요구하는 이용규정 준수 의무
- ⑤ 기타 계약에 따른 입소자로서의 의무사항의 준수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주보호자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 이 “갑” 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④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3)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입소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④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8. 계약해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 ① 본 시설의 계약해지 : 본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의 10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본 시설은 입소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라.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퇴소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서 퇴소 사실을 안 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종료]

-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